

「2006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 -도시관리국」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세입·세출예산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안 건 명

- 2006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11. 18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제안사유 및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
- 2006년도세입·세출예산(안) 참조

2006년도 세입예산(안)

○ 세입예산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6 예산(안)	2005 예산	증(△)감	증감율(%)
합 계	240,940,093	233,335,672	7,604,421	3.3
일 반 회 계	199,000,000	194,000,000	5,000,000	2.6
특 별 회 계	41,940,093	39,335,672	2,604,421	6.6
의료급여기금	151,213	61,311	89,902	146.6
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	1,660,462	1,466,511	193,951	13.2
주 차 장	40,128,418	37,807,850	2,320,568	6.1

■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6 예산(안)		2005 예산		증(△)감		
	예 산 액	구성비	예 산 액	구성비	금 액	증감율 (%)	
합 계	199,000,000	100	194,000,000	100	5,000,000	2.6	
지 방 세	70,877,000	35.6	80,639,000	41.5	△9,762,000	△12.1	
구 세	재 산 세	46,037,000	23.1	56,805,000	29.3	△10,768,000	△19.0
	사업소세	22,549,000	11.3	21,647,000	11.2	902,000	4.2
	면 허 세	1,321,000	0.7	1,237,000	0.6	84,000	6.8
	과년도수입	970,000	0.5	950,000	0.5	20,000	2.1
세 외 수 입	70,805,816	35.6	66,748,299	34.4	4,057,517	6.1	
재정보전금	2,293,600	1.2	2,292,653	1.2	947	0	
조정교부금	22,178,030	11.1	19,173,349	9.9	3,004,681	15.7	
보 조 금	32,845,554	16.5	25,146,699	13.0	7,698,855	30.6	

■ 특별회계 - 3개 회계 41,940,093천원

2006년도 세출예산(안)

○ 세출예산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6년 예산(안)	2005년 예산	증(△)감	증감율(%)
합 계	240,940,093	233,335,672	7,604,421	3.3
일반회계	199,000,000	194,000,000	5,000,000	2.6
특별회계	41,940,093	39,335,672	2,604,421	6.6

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- 136,093,212천원 (구전체 56.5%)

- 일반회계 : 95,813,581천원
- 특별회계 : 40,279,631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06년 예산(안)	2005년 예산	증(△)감	증감율(%)
회 계 별	국 별				
총 계		136,093,212	128,737,582	7,355,630	5.7
일반회계	소 계	95,813,581	90,868,421	4,945,160	5.4
	생활복지국	72,115,786	61,881,938	10,233,848	16.5
	도시관리국	9,632,665	10,225,728	△593,063	△5.8
	건설교통국	14,065,130	18,760,755	△4,695,625	△25.0
특별회계	소 계	40,279,631	37,869,161	2,410,470	6.3
	의료급여기금	151,213	61,311	89,902	146.6
	주 차 장	40,128,418	37,807,850	2,320,568	6.1

▪ 도시관리국 소관 - 9,632,665천원

• 일반회계 : 9,632,66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국별	과 별	세 항 별	2006년 예산(안)	2005년 예산	증(△)감	증감율 (%)
도 시 관 리 국	합 계		9,632,665	10,225,728	△593,063	△5.8
	도 시 관리과	소 계	1,483,848	2,830,546	△1,346,698	△47.6
		도시계획관리	1,483,848	2,830,546	△1,346,698	
	건축과	소 계	148,933	162,659	△13,726	△8.4
		건축지도	148,933	162,659	△13,726	
	지적과	소 계	183,570	257,254	△73,684	△28.6
		지적관리	183,570	257,254	△73,684	
	공 원 녹지과	소 계	7,816,314	6,975,269	841,045	12.1
		공원관리	4,143,153	3,284,595	858,558	
		체육시설관리	1,709,331	1,618,475	90,856	
		녹지관리	1,963,830	2,072,199	△108,369	

• 특별회계 : 없음

□ 검토 의견

○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

- 총 22억8천1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0억2천8백만원 대비 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12.4%가 증가 되었습니다.
-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구유재산사용료,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.

○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

- 총 96억3천2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(안) 2,409억4천만원의 4.0%를 차지하고 있으며
- 이는 2005년도 예산 102억 2천5백만원 대비 5억 9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5.8%가 감소 되었습니다.

○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

도시관리과

○ 도시관리과 2006년도 예산은

- 총14억8천2백만원으로, 2005년도 예산 28억3천만원 대비 13억4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47.6%가 감소되었습니다.

○ 주요편성내역을 보면

- 도시계획관련 신문광고료,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수수료, 각종 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에 1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
- 여의도지역·시흥대로변·영등포부도심·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관련 4억7백만원이
- 공동주택관리지원에 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.

건 축 과

○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

- 1억4천9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억6천2백만원 대비 1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8.0%가 감소되었습니다.

○ 주요편성내역은

- 노후주택 안전진단비, 위원회운영등 일반운영비에 9천8백만원이
- 자산취득비에 3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.

지 적 과

○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

- 1억8천3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억5천7백만원 대비 7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28.6%가 감소 되었습니다.

○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

-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,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등 일반운영비에 1억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
공원녹지과

○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

- 총78억1천6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69억7천5백만원 대비, 8억4천1백만원 이 증액 편성되어 12.1%가 증가 되었습니다.

○ 주요편성내역을 보면

- **공원관리에서 41억4천3백만원이 편성된 바,**
 - 공원관리 상용인부임과 공원유지관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고,
 - 공원전기료 등 공공요금 8천7백만원과,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에 1천8백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으며,
 - 공원시설물 정비사업2억원, 문래공원재정비5억원, 당산제2공원조성 15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3천2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.
- **체육시설관리에서는 17억1천만원을 투입하여,**
 - 체육시설관리인부임등 인건비 2억1천6백만원, 안양천·도림천 특화사업 및 관리사무소 신축에 10억원, 하천변화장실개선 1억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,
- **녹지관리분야에 19억6천4백만원으로**
 - 녹지관리 상용인부임등 인건비 10억원, 각종 재료비 3억2천2백만원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
○ 검토결과를 요약하면

• 도시관리과의 경우

- 여의도지역·시흥대로변·영등포부도심·영등포1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바(589페이지)우리구의 장기발전방향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뉴타운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신길·도림·문래·양명동 까지를 포함한 용역을 확대 실시함이 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, 용역 결과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• 공원녹지과의 경우

- 안양천·도림천 관리사무소 신축건(621페이지, 2억원)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와 관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며,
- 아울러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허가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신축해야 함으로 동건은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재검토대상 예산사업

사 업 명	2006예산액(만)	페이지	비 고
안양·도림천 관리사무소 신축	200,000천원	624	지방재정법제77조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와 관련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함
경비용역료	780천원	621	

- 기타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세입·세출예산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습니다.

2005. 12. 7

보고자 : 이 남 식